

청주교육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운영 규정 전문

제정 2012. 02. 28. 규칙 제1290호
1차 개정 2016. 04. 27. 규칙 제1415호
2차 개정 2018. 10. 29. 규칙 제1475호
3차 개정 2020. 12. 9. 규칙 제1564호
4차 개정 2022. 1. 20. 규칙 제15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된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실험실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실험실, 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 함은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총장을 말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수업 및 실습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교수를 말한다.<개정 2018.10.29.>
5.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해당 연구실의 학과 조교를 말한다.<개정 2018.10.29.>
6.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20.>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9. “안전교육책임자”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무처의 교무처장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총괄책임자)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부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지휘·감독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위원회) ①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과학교육과학과장, 실과교육과학과장, 컴퓨터교육과학과장, 시설2팀장, 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9.>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설비 확보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안전환경관리자가 겸임 한다.

⑥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시 위원회는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며 사고대책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⑦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및 회의결과는 연구실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0.29.>

제6조(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8.10.29.>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 내에 유해화학물질 및 기계장치 등에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개정 2018.10.29.>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9.>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해당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삭제<개정 2018.10.29.>

제8조(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2.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3.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4.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
5. 연구실 폐기물(폐수 포함)의 분리수거 및 처리 의뢰
6.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등의 게시 및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제8조의2(안전환경관리자의 임무)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29.>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지원
3.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사고조사) ①연구실 안전사고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안전환경관리자 및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10.29.>

②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9.>

③안전환경관리자는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개정 2018.10.29.>

④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10.29.>

⑤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8.10.29.>

⑥사고사례를 모든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킨다.<개정 2018.10.29.>

제10조(실험폐기물 등의 수집 및 처리)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회석하여 폐수탱크에 수집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위험성 폐액 또는 폐수원액은 별표 3 실험폐액의 분별 수집 및 처리수칙에 준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집 보관하고 별표 4 서식을 작성하여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처리를 의뢰한다.

②삭제

제10조의2(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유해물질 및 시약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등을 시약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약 및 위험물은 연구실에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연구실에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를 구입(반입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연구실 이용 및 유지·관리 사항) ①연구실 이용 전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교육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이용 전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구실 각 장치의 조작, 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이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3. 폭발, 유독가스,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실험에는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 임회하에 실습하여야 한다.
4. 연구실 안전 일반수칙 별표 1, 전기안전수칙 별표 2에 준하여 각 실의 특성에 맞게 연구실안전담당자가 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시설 및 장비를 관련기준 및 장비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물질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

④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사항을 별도의 매뉴얼에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추어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2.1.20.>

제10조의4(비상상황)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 [별표5]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

②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별표6]을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

제11조(안전점검) ①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환경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 종류와 실시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실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 관련 실험실습을 시작하기 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정밀점검 : 연구개발, 실험실습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정밀점검은 2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2. 정기점검 및 정밀·특별안전점검 : 안전환경관리자 및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제11조의2(안전교육) ①안전교육책임자는 매 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책임자는 매학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안전교육은 집합교육 및 온라인을 통한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교육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시간 등을 취합하여 매년 반기 말일 10일 전까지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연구활동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7]과 같다.<개정 2022.1.20.>

제12조(건강검진)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②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해당 학과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 등 안전사고 수습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가입대상은 학부생 전원과 연구실 이용 전공 대학원생 등 상위법에 정한 보험가입 대상자로 한다.

제14조(예산의 반영)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학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사고 배상 보험료
2.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비
3. 연구활동종사의 보호장비 구입비용
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 및 지적사항 안전환경 개선비용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용<개정 2018.10.29.>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8.10.29.>

③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학과 및 부서에서 이공계 실험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시 인건비 총액의 1~2%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

④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전년도의 사용 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12. 02. 28. 규칙 제1290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4. 27. 규칙 제1415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9. 규칙 제1475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9. 규칙 제1564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0. 규칙 제15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실 안전 일반수칙

1. 각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실습을 행할 것
2. 연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정리정돈을 잘할 것
3. 연구실 내에서는 뛰어 다니지 말 것
4. 실험기기 가동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 것
5. 실험기기의 가동 중에는 정비 및 청소를 하지 말 것
6. 실험기기용 장비의 밸브는 서서히 열고 서서히 잠그도록 할 것
7. 가연물량은 진행 중인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할 것
8. 모든 실험장치 및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손대지 말 것
9. 실험기기 사용의 제한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10. 폭발물이나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실험 시에는 실험 책임자의 입회하에 실험하도록 할 것
11.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에는 “화기엄금”을 준수하도록 하며 구급 및 소방장비 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
12. 인화성 물질(유류 및 가스)은 공기 유통이 잘 되고 사람의 접근이 많지 않은 곳에 격리시켜 보관하고 아래의 표를 부착하여 관리할 것

통 제 구 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13. 통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이며 출입 필요시에는 통제구역 시설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할 것

[별표 2]

연구실 전기안전 수칙

1. 연구실 기기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를 것
2. 연구실 기기의 전기 스위치를 넣기 전에 안전을 확인할 것
3. 연구실 기기 사용 종료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할 것
4. 젖은 손이나 맨발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말 것
5. 연구실 기기의 퓨즈에 도선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말 것
6. 모든 연구실 기기의 접지를 철저히 할 것
7. 이동전선에는 캡타이어를 씌울 것
8. 연구실 기기의 수리 이동은 전원을 끄고 실시할 것
9. 연구실의 기기 및 누전 차단기, 누전화재경보기의 테스트 버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10. 연구실 기기의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1. 고압선 가까이에서는 작업하지 말 것

[별표 3]

실험폐액의 분별수집 및 처리수칙

1. 실험폐수 원액의 수집은 수거용기에 분별 수집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표면에는 수거 폐액의 성상, 위험성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수집용기에 저장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실험폐액 성분에 따라 정확한 분별 수집을 하고, 유해물질의 폐기 또는 방류는 절대 엄금한다.
 - 나. 폭발성물질(예, 질산에스텔류, 폴리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산화물 등)은 배출자 자신의 책임에 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처리한다.
 - 다. 무기계폐액과 유기계폐액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고형물(유리조각, 실험기구, 탈지면)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마. 폐액의 분류가 불명확할 때는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한다.
 - 바. 실험폐수 원액의 보관 장소는 통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계가연성폐액은 1실에 50ℓ 이상을 보관할 수 없다.
 - 사. 취급상의 주의를 요하는 폐액은 반드시 의뢰전표 및 수집통에 적색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여 처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실험폐액의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수집용기의 뚜껑을 꼭 잠근다.

[별표 4]

폐시약 및 시약병 처리수칙

1. 시약병 및 폐기시약 배출방법

－ 폐시약(액체성분) + 용기(유리병, 플라스틱)일 경우

가. 폐시약은 폐액수거용기에 성분별로 분별·수집한다.

나. 용기는 상표 및 뚜껑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유리병제조업체에 처리 의뢰한다.

다. 세척액은 별도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여 년1회 폐수위탁처리 시 적정업체에 처리하도록 한다.

라. 용기는 상표를 제거하고 세척한 후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유리병 제조업체에 처리 의뢰한다.

2. 시약병 세척방법

가. 빈 용기는 상표 및 뚜껑을 제거하고 청정세제 또는 세척제로 3회 이상 세척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빈 용기는 사람의 후각 검사 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야 한다.

다. 빈 용기는 안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약병 세척검사

안전관리책임자는 학과에서 배출되는 시약병에 대하여 세척검사를 실시하여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거나 유리병 제조업체에 처리 의뢰한다.

－ 시약병 배출전표 및 세척확인 필증

정 리 번 호 NO	보 관 일 시		년	월	일
시약병 배출전표 및 세척확인 필증					
배 출 기 관	학과		실험실		
배 출 량	Kg	전화번호			
확 인 자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자		(인)		
	연구실 안전 관리 책임자		(인)		

[별표 5]<신설 2022.1.20.>

비상시 행동요령

■ 화재 발생시

1. 주위에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한다.
2. 화재 발신기를 누른다.
3.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다.
4.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5. 건물 내의 소화전을 작동하여 소화한다.
6. 실험·실습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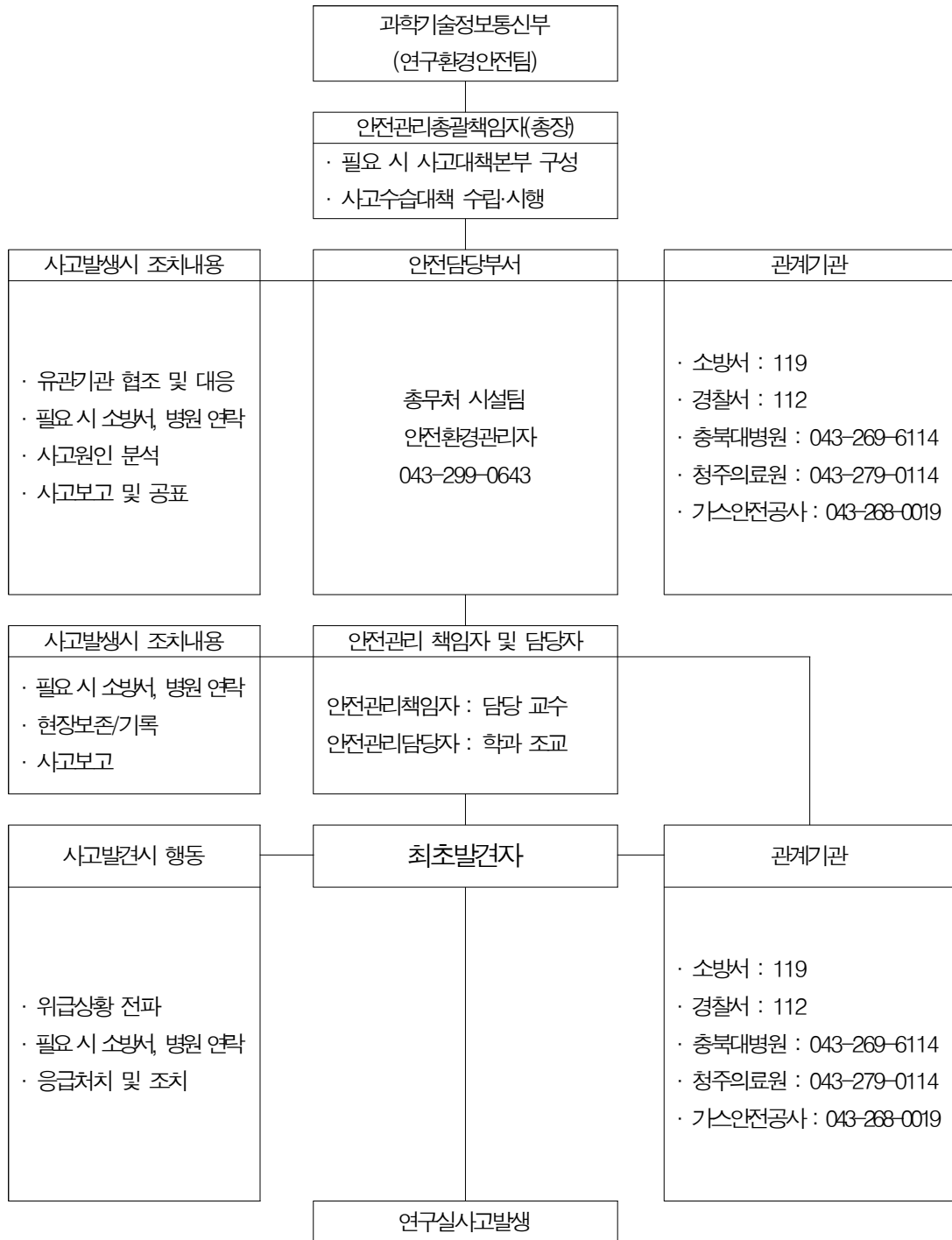
■ 부상을 당한 경우

1. 소방서 또는 병원에 전화하여 앰블런스를 부른다.
(병원 전화번호 : _____)
2. 필요한 응급처치를 행한다.
3. 안전관리자·연구실책임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평소에 다음의 위치를 확인한다

1. 가장 가까운 소화기
2. 화재경보기
3. 가장 가까운 비상구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별표 7]<신설 2022.1.20.>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정기 교육 훈련	연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연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2. 신규 교육 훈련	근로자	가.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3. 특별 안전 교육·훈련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연구주체의 장은 제2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월 연구(실험)실 일상점검표

※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실험전에 일상점검 실시
(점검방법 : 양호○, 불량X, 해당없음/)

- 소 속 :
- 연구(실험)실명 :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서						
사 고 내 용	사 고 일 시					
	사 고 실 험 실					
	사 고 종 류		(화재, 폭발, 부상, 약품중독 등)			
	사 고 내 용 (육하원칙)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학 과 명	성 명	생년월일	입원일자	피해정도
물적피해상황		피해물		피해량	피해액(추산)	비 고
사 고 원 인						
안전관리 담당자 의 견						
년 월 일 안 전 관 리 담 당 자 : _____ (인) 안 전 관 리 책 임 자 : _____ (인)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연락망 및 비상시행동요령

비상연락망

☐ 안전관리책임자

– 이 름 :

– 전화번호 :

☐ 안전관리담당자

– 이 름 :

– 전화번호 :

☐ 안전환경관리자

– 이 름 :

– 전화번호 :

비상시 행동요령

☐ 화재 발생시

1. 화재경보기를 작동한다.
2. 119로 전화한다.(또는 소방서, 전화)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올바른 소화기를 사용하여 끈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을 닫는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1. 119에 전화하여 앰블런스를 부른다.(또는 병원, 전화 :)
2.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정·부)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일과 후 혹은 주말에 사고가 발생할 시는 119, 본부당직실(299-0700)로 전화한다.

☐ 다음의 위치를 확인한다.

1. 가장 가까운 전화
2. 가장 가까운 소화기
3. 화재경보기
4. 가장 가까운 비상구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위험장소경고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